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9일, 박대출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대출의원)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 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로 회귀하는 것에 연동하여,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기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계로 회귀하려는 것임(안 제8장제2절의2 삭제 등).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 체계(국세)로서,

① 주식·채권·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20~25%의 세율로 포괄적으로 과세하되, ②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분류과세)하며, ③ 기본공제 및 손실을 상제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되 5년간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징을 가짐.

당초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상황인데, 2024년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앞둔 현재 까지도 그 시행을 둘러싼 찬반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임.

우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은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목적을 언급하며 ① 현행 조세체계는 금융상품의 유형 및 소득 실현방식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있어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이 손실 상계 및 이월을 통하여 실질적인 순수익만 과세하는 것이 응능과세원칙상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

반면 정부를 포함하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입장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2020년 추정치 기준으로 과세대상자가 15만명까지 확대(세부담 +1.5조원 증가)되고 그 밖에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발생하여 투자자가 해외시장 등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의 대상인 지방소득세는 2010년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Surtax)로 신설된 후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소득세·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서울도 소득세·법인세와 각각 동일

한 소득구간을 설정한 후 소득구간별로 소득세·법인세 세율의 1/10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신고·납부 등 세부 사항도 가급적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찬반입장 및 ② 기획재정위원회의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법률안 심사경과를 지켜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